



문서번호 : 16-05-사무-07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이상희 변호사 010-8884-48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담당 양노자 사무처장 02-365-4016)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회견문 첨부)

전송일자 : 2017. 6. 1.(목)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3페이지 이하 첨부)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기자회견문>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이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외교부는 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30년이 지나 외교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30년이 지나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

2.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는커녕 배상청구권이나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완전하고 실효적인 회복과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고,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도 위 합의를 비판하면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년 5월 한국 정부에게 위 합의가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3.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협상문건을 비공개로 은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위 항소를 취하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합의 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이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합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진행된 전화회담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합의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가장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가 외면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할 것이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2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한 인권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의 회복,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 정부에게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을 담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끝.